

보호시설(제2조제1항제23호 관련)

1. 제1종보호시설

- 가. 학교 · 유치원 · 어린이집 · 놀이방 · 어린이놀이터 · 학원 · 병원(의원을 포함한다) · 도서관 · 청소년수련시설 · 경로당 · 시장 · 공중목욕탕 · 호텔 · 여관 · 극장 · 교회 및 공회당(公會堂)
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㎡ 이상인 것
- 다. 예식장 · 장례식장 및 전시장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
- 라.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
- 마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

2. 제2종보호시설

- 가. 주 택
- 나.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(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㎡ 이상 1천㎡ 미만인 것